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 1. 서류심사

구 분	합계	성적 및 교육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 및 가점
청년인턴	100	30	10	60	등록장애인: 5점

\* 장애인청년인턴(제한경쟁) 채용에는 별도의 장애인 가점 없음

### 2. 면접시험

구 분	합계	전문성/역량	인성/태도	우대 및 가점
점수	100	50	50	등록장애인: 5점

\* 장애인청년인턴(제한경쟁) 채용에는 별도의 장애인 가점 없음

### 3.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공통)

구 분	일 반 자 격	배 점
청년인턴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건설기계설비/농업기계/컴퓨터활용능력	기사 : 3점/ 산업기사 : 1점 1급 : 2점/ 2급 : 1점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1급 : 3점/ 2급 : 2점 3급 : 1점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4. 자기소개서 채점기준

평가기준	배점	채 점 기 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	성과도출 (10)	10	8	6	4	2점
	자기주도 (10)	10	8	6	4	2점

### 5.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

구분	점수 부여 기준	비고
학교교육	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	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
사외교육	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	

※ 사외교육 수료증은 면접 시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u>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u>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u>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u>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원분야 :

지원자 성명 :

(서명)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취업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